

수원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1가단5226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신흥철, 최종민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지원

변 론 종 결 2023. 6. 13.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559,337,3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95,542,1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D가 2019. 7. 3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10억 원을 이자 연 12%, 연체 이율 연 14.4%, 변제기 2020. 7.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C가 D에 보증한도액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차전3507로 D, F 주식회사, G(이하 'D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3. 11. 위 법원으로부터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4,436,940,278원 및 그 중 7,337,273,896원에 대하여는 2019. 6. 25.부터, 7,099,666,382원에 대하여는 2019. 7.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무자력인 D를 대위하여 C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9918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 5. 25. 'C는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0. 7.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4.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C 등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C는 2020. 1. 14.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제1항 부동산', '제2항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1. 1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한편 제1항 부동산에는 2016. 11. 11. 주식회사 H 명의의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2018. 4. 30. 위 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1항 부동산은 1,051,700,000원, 제2항 부동산은 333,770,000원 합계 1,385,477,000원에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바, 경매법원은 2021. 6. 23. 위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선순위인 남양주시의 당해세액, 위 H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854,879,508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854,879,508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 29, 30, 42, 4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D 등에 대한 14,436,940,278원 및 그 중 7,337,273,896원에 대하여는 2019. 6. 25.부터, 7,099,666,382원에 대하여는 2019. 7.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는 사실, D가 2019. 7. 31. E에 10억 원을 변제기 2020. 7.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C가 D에 보증한도액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원고가 D를 대위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E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D 등에 대한 채권(지연손해금 발생일이 2019. 6. 25.과 2019. 7. 30.로 근저당권설정 이전임)과 피대위채권인 D의 C에 대한 채권(대여일 및 연대보증일이 2020. 7. 31.로 근저당권설정일 이전임)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경매절차에서 합계 1,385,477,000원에 매각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보증한도액 12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 외에도 H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각 2억 4,000만 원,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체결 당시 C는 채무초과의 상태이거나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채무초과의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C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가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행한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분된 854,879,508원의 배당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하는데, 이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559,337,3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며,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95,542,1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며,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D가 대출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1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주채무자인 E 소유의 신발 잡화 22,860점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나, 증인 C가 양도담보계약서(갑 제16호증)는 D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 같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이 원고 주장의 양도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J가 C에게 속아 130억 원 한도의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J가 부담할 수 있는 보증금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 J, 피고 위 3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당시 피고는 E와 D 사이의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J가 피고 주장의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일자인 2019. 8. 8.인데(을 제9호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E과 C가 2019. 12.경부터 D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갑 제29호증)한 이후인 2020. 1. 14. 체결된 점, 증인 C도 피고나 J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앞선 약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정룡

[별지1]**1. [1동의 건물의 표시]**

남양주시 K에 있는 L아파트 M동

(도로명 주소 남양주시 N)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경사스라브지붕 20층 공동주택(아파트)

1 내지 20층 각 394.5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남양주시 K 대 1901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8층 O호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168.7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9016분의 54.803

2. [1동의 건물의 표시]

남양주시 P에 있는 Q아파트 R동

(도로명 주소 남양주시 S)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9층 아파트

1 내지 19층 각 459.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남양주시 P 대 17472.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7층 T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7472.3분의 62.400

[별지2]

1.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의정부지방법원 1 사건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배당금지급채권 중 559,337,39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2.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의정부지방법원 1 사건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배당금지급채권 중 295,542,118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